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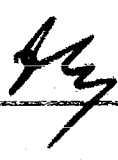



문서번호 법무 11010 - 291

시행일자 1996. 3. 8.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중개정지침 발령

1.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중개정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예규안 1부. 끝.

(제2안)

예규제 617 호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중개정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 617 호 2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감사담당관

제목 예규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중개정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3. 15.

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 617 호 (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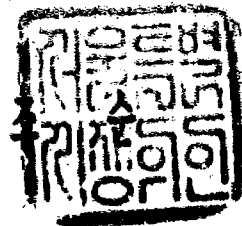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감사공무원중발급지침중개정지침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무원징계규칙개정지침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감사2담당관이 폐지되고 조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95.3.1 직제 개편으로 감사관의 명칭이 감사실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정리(안 제2조·제7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

나. '96.1.15 직제 개편으로 감사2담당관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 공무원중 부여번호를 조정 변경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중개정지침안

서울특별시감사공무원증발급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감사관", "감사관실"을 "감사실"로 한다.

제7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중 "감사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감사공무원증 번호 부여) 감사공무원증 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로 부여
하고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감사담당관 1 - 01
2. 조사담당관 2 - 01
3. 민원담당관 3 - 01
4. 특별감찰계 4 - 01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u>감사관</u>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 산하 공무원중 <u>감사관실</u>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p>	<p>제2조(적용범위).....</p> <p>.. <u>감사실</u></p> <p>.....</p> <p>.. <u>감사실</u></p> <p>.....</p>
<p>제7조(감사공무원중의 발급및 재발급)</p> <p>①<u>감사관</u>이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감사공무원중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감사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u>감사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감사공무원중의 발급및 재발급)</p> <p>①<u>감사실장</u></p> <p>.....</p> <p>.....</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p> <p>.....</p> <p>.....</p> <p><u>감사실장</u></p>

현행	개정안
<p>④<u>감사관</u>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장구하여야 한다.</p>	<p>④<u>감사실장</u></p> <p>.....</p> <p>.....</p> <p>.....</p>
<p><u>제8조(감사공무원증 번호 부여) 감사공무원증 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로 부여하고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감사1담당관 1-01</u> <u>2. 감사2담당관 2-01</u> <u>3. 조사담당관 3-01</u> <u>4. 민원담당관 4-01</u> <u>5. 특별감찰반 5-01</u> 	<p><u>제8조(감사공무원증 번호 부여) 감사공무원증 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로 부여하고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감사담당관 1-01</u> <u>2. 조사담당관 2-01</u> <u>3. 민원담당관 3-01</u> <u>4. 특별감찰계 4-01</u>
<p><u>제9조(감사공무원증 용지의 수불) 감사관은 필요로 하는 감사공무원증 용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에 의하여 불출한다.</u></p>	<p><u>제9조(감사공무원증 용지의 수불) 감사실장</u></p> <p>.....</p> <p>.....</p>
<p><u>제10조(직인의 사전 날인 등) ①감사관은 공무원증 용지에 시장의 직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p>	<p><u>제10조(직인의 사전 날인 등) ①감사실장</u></p> <p>.....</p>

현행	개정안
<p>②<u>감사관</u>은 공무원증에 기재할 사항을 완전히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철인을 압인후 포장한다.</p>	<p>②<u>감사실장</u></p> <p>.....</p> <p>.....</p>
<p>제12조(감사공무원증 회수 등)①<u>감사관</u>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실 확인서를 받는다.</p>	<p>제12조(감사공무원증 회수 등)①<u>감사실장</u></p> <p>.....</p> <p>.....</p> <p>.....</p> <p>.....</p> <p>.....</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③<u>감사관</u>은 소속 감사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휴직을 하게된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p>	<p>③<u>감사실장</u></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④<u>감사관</u>은 감사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감사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감사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등 정상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p>1~5(생략)</p> <p>6.기타 <u>감사관</u>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때</p> <p>⑤(생략)</p> <p>제13조(감사공무원증 분실자에 대한 조치)① <u>감사관</u>은 감사공무원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p> <p>1~2(생략)</p> <p>②(생략)</p>	<p>④<u>감사실장</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5(현행과 같음)</p> <p>6.....<u>감사실장</u></p> <p>.....</p> <p>⑤(현행과 같음)</p> <p>제13조(감사공무원증 분실자에 대한 조치)① <u>감사실장</u></p> <p>.....</p> <p>.....</p> <p>.....</p> <p>1~2(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